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2. 2. 27.

운 영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10일

나. 제출자 : 김화영 의원 외 3인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2월 24일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
제1차 회의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화영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·다양화됨에 따라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 : 종전의 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』을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』으로 변경
- 전문위원의 직급을 “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, 지방별정 6급 상당”을 “지방행정사무관,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,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”으로 함(안 제4조제1항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영)

- 이 개정규칙안은 다원화 되어 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을 정비하여 의정 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-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」으로 변경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
  - 안 제1조에 인용된 근거 조례명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가 현행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아 변경된 조례명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로 수정하였으며
  - 안 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표시한 별표를 삭제하고 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,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,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”로 변경하였으며
  - 그밖에 부분은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조문과 용어,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.
- 검토결과 이 개정규칙안은 변경된 조례명을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규칙 개정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2년 2월 9 일

발 의 자 : 김화영 의원 외 3 명

## 1. 제안이유

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·다양화됨에 따라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종전의 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』을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』으로 변경
- 나. 전문위원의 직급을 “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, 지방별정 6급 상당”을 “지방행정사무관,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,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”으로 함(안 제4조제1항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 제15조제2항
- 2)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』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#### 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결과 : 생략

가) 법적근거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
제5조제1호

나) 사 유 :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 
없는 경우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본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본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,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,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”으로 임명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소관안전에 대한 검토 보고”를 “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소관사항”을 “소관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

별표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</u> <u>무분장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서울특별시</u> <u>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</u> <u>정수조례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</u> <u>제6조</u> 규정에 의하여 <u>의회사무국</u> <u>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</u>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생 략)</p> <p>②사무국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분회</u>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</p> <p>7. <u>분회</u>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 원 및 보조</p> <p>8. ~ 13. (생 략)</p>	<p>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</u> <u>및 사무분장 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서울특별</u> <u>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</u> <u>례</u>」 제6조에 따라 <u>의회사무국의</u> <u>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정례회</u> ----- -----</p> <p>7. <u>정례회</u> ----- -----</p> <p>8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

<p>14. <u>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 <u>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</u></p> <p>② 전문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 <p>1. <u>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</u></p> <p>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<u>소관사항</u>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</u></p>	<p>1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전문위원) ① <u>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,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,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</u></p> <p>2. ----- <u>소관 사항</u>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
---	--